

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명칭		전화번호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
	주소		
신청내용	변경내용		
	변경사유		

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13조제2항 본문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.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		수수료 없음					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	→	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	→	승인서작성·발급 원자력안전위원회	→	승인서 수령 신청인